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31(목)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요 약

- 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자 기준을 현행 '거소' 개념에서 '183일 체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시 그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의 순서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하였는바, 단계적으로 심사를 적용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둘째, 기준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보다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즉, 민법상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기초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 여부 판단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 중요한 단절,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 등 보조지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소’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바, ‘1년 이상의 거소’ 규정은 국제적 이중거주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거주자 판단 시 ‘거소’ 기준은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때’부터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I

최근 국제조세 동향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1. 최근 국제조세 동향

가. 역외탈세 증가

- 국제조세란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조세문제를 다루는 것임
 -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함¹⁾
-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거래는 주로 차명자산 보유, 불법소득, 역외탈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여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역외탈세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외에 SPC를 설립하여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로 이전하여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써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임²⁾
 - 2008~2012년간의 역외탈세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건수는 537건, 세금추징액은 2조 6,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2)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하반기에도 역외탈세·민생침해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2012. 7. 10

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표 1>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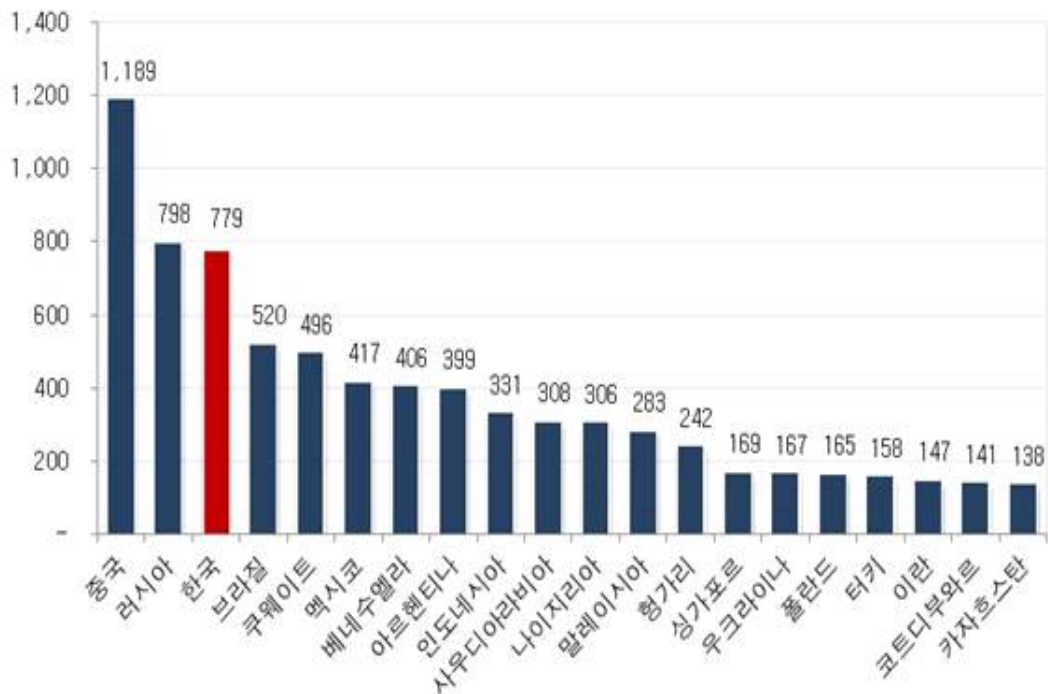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30	54	95	156	202	537
추징세액	1,503	1,801	5,019	9,637	8,258	26,218

자료: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대규모 역외탈세 급증」, 2013. 3. 20

- 영국의 국제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 및 역외탈세 연구단체로 알려져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추정치는 1970~2010년 간 약 7,790억달러임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0개국 중 중국 11,890억달러, 러시아 7,980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추정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Tax Justice Network,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2012. 7.

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글로벌 금융거래의 증가와 날로 발전하는 금융기법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그 수법을 보다 정교화시키고 있음
 - 역외탈세는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고소득자가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여 그 부담을 성실납세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들은 역외탈세를 추적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공유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탈루되고 있는 거액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체결,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역외탈세 대처를 위한 국제적 정보 공조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바, 2013년 12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세계 8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함
 - 또한, 마셜제도, 쿡 아일랜드, 바하마와 같은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함

2. 역외탈세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 세법에서의 거주자 판정기준 및 과세소득 여부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조세회피 기법이 최근 들어 널리 쓰이고 있음³⁾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도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3) 구자은·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5, p. 48

-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은바, 소득세법상 개인의 역외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근거는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우리나라의 ‘주소’라는 기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만 언급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 생활관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실상의 거주지를 판정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여 규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자 기준을 현행 ‘거소’ 중심의 개념에서 ‘183일 체류’ 기준으로 변경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도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알아보고, 최근 거주자 판정기준을 변경한 영국의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 및 해외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1. 개요

- 우리나라는 개인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즉,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짐⁴⁾
 - 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
 -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함
 -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로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이 인정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이 인정됨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함⁵⁾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음
 -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봄

4) 「소득세법」제3조

5) 「소득세법」제1조 제1항

3. 주소의 판정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는 승무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를 판정함

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소와 거주기간의 계산

가. 거소의 개념

-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나. 거주기간의 계산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4. 요약

- ☐ 우리나라의 개인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및 기본통칙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과세목적상 영국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주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간주규정
○ 거주자 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 주소¹⁾: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거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 주소에 대한 간주규정: - 국내 주소 있음: ①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직업가질 때 ② 국내에 있는 가족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 국내 주소 없음: ①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가질 때 ②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재입국 거주자가 인정되지 않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에 체제하는 장소에 따라 주소를 판단함 ○ 거주자 간주규정: 국외 근무공무원 또는 국외사업장 및 국내법인의 100%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거주자 간주규정: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 비거주자 간주규정: ①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②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주: 1)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봄

자료: 세법연구센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9, p. 14 재인용

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주요 사례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주요 사례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음

<표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주요 사례

사례	관련 내용	관련 규정
주소 ¹⁾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봄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함 -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함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1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사례	관련 내용	관련 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함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납세의무의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일까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3-1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3-2

주: 1)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봄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III

주요국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⁶⁾

1. 영국

- 영국의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영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판정기준(indicator)은 2013년 4월 6일부터 다음과 같이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되었음
 - 기존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결정은 법원(courts)에 의해 확정된 광범위한 사실에 의존하여 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결정하는 구조였음
 -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시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로서 과세하였으며, 183일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도 영국 체류목적 및 영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등에 따라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판정되기도 하였음

※ 기존 영국의 세법이나 판례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과세연도 중 영국에서 체재한 일수가 183일 이상인 자(단, 체재일수는 연속하지 않아도 됨)
- ② 2년 이상 영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 ③ 영국에서 3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거주자, 통상의 거주자로 봄
- ④ 영국에 주택을 구입한 자
- ⑤ 가구가 붙은 주택을 2년 이상(가구가 없는 주택은 1년 이상) 임대한 경우
- ⑥ 매년 계속적으로 체재하는 경우
 - 이 때 계속적인 체재는 4년간 연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1년간의 체재는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⑦ 호텔에 체재한 경우에는 위의 ①~③까지가 적용됨

6) 세법연구센터(2013), pp. 25~67 요약 및 정리

1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 영국 국세청은 새로운 거주자 법정심사가 과세목적상 거주자 여부를 비교적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복잡한 세계 환경하에서 거주자 지위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거주자 법정심사의 목적은 개인이 영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관련된 세목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거주자 법정심사는 국외거주 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 영국거주 심사(Automatic UK tests)와 영국관계 심사(Sufficient ties test)가 있음
 - 국외거주 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됨
 - 영국거주 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됨
 - 국외거주 심사 또는 영국거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개인은 영국관계 심사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받게 됨
 - 영국관계 심사는 영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와 거주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성을 판단하게 됨
 - 국외거주 심사를 충족하지 못하고, 영국거주 심사 중 한 가지를 충족하거나 영국관계 심사를 충족하면, 한 과세기간 동안 과세목적상 영국 거주자로 판단됨 (과세기간 분할 제외)

가. 국외거주 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

- 거주자 법정심사 중 국외거주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 테스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뉨
 - 세 가지 국외거주 심사 중 하나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다른 테스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 1차 국외거주 심사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영국에 1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됨

□ 2차 국외거주 심사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없고, 당해 과세연도에 영국에 4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됨

□ 3차 국외거주 심사

- 업무상 중요한 단절(significant break) 없이 해외에서 과세연도 동안 전일 근무 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됨
-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91일 미만을 체류하는 경우
-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총일수가 31일 미만인 경우

□ 3차 국외거주 심사는 다음의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자동차, 또는 항공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
- 영국에서 시작, 종료 또는 시작과 종료되는 국경 간 이동을 최소 6번 이상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나. 영국거주 심사(Automatic UK tests)

□ 1차 영국거주 심사

-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 영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영국 거주자로 간주됨
- 체류일수는 자정 12시까지 머무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 2차 영국거주 심사

-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에 영국에 주거(home)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 거주자로 간주됨⁷⁾
- 충분한 관련 시간(sufficient amount of time)을 보내는 영국의 주거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는 주거(overseas home)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용 체류시간(permitted amount of time)만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류일수를 충족하여

7) 주거는 개인이 안정성과 충분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또는 일부분), 자동차, 선박,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구조 등 다양할 수 있음

야 함

- 연속적으로 91일 이상 영국에 체류하되 적어도 30일은 과세연도에 체류하여야 함

- 충분한 관련 시간은 과세연도 중 영국 주거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기간을 말하며, 허용 체류시간은 과세연도 중 30일 미만을 의미함

- 영국에 하나 이상의 주거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각 주거를 고려하여야 하며, 영국 주거 중 하나의 주거만 조건을 만족해도 영국 거주자로 간주됨

□ 3차 영국거주 심사

-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요한 단절 없는 전일근로자(full time)에게 세 번째 영국거주 심사를 적용함

- 365일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함

- 365일 기간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날의 총근무일수의 75%가 영국에서 근무한 날이어야 함

- 중요한 단절이라 함은 영국에서 31일 이상 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 31일 이상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영국에서 3시간 이상 일한 날과 연차,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입양휴가 등(법정 또는 기타 고용주에 의해 허용)이 제외됨

다. 영국관계 심사(Sufficient ties test)

□ 국외거주 심사와 영국거주 심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국관계 심사를 적용함

-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4가지 보조지표)으로 영국에서의 사회 경제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테스트임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동안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당해 과세연도는 4가지 보조지표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상황 1)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4가지 보조지표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다면, 국가 관계(country tie)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상황 2)

- 영국관계 심사는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 체류한 날짜에 따라 고려할 보조지표의 개수가 다름

<표 4> 과세목적상 영국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과세연도 동안 영국 체류 날짜	영국 관련 보조지표 개수
상황 1	46~90일	4개 모두
	91~120일	최소 3개
	120일 초과	최소 2개
상황 2	16~45일	4개 모두
	46~90일	최소 3개
	91~120일	최소 2개
	120일 초과	최소 1개

자료: 세법연구센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9, p. 31 재인용

-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4가지 보고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족관계 지표는 납세의무자와 생활하는 남편, 부인, 법적 동거인, 기타 동거인, 자녀(18세 이하)를 말함
 -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총 61일 미만으로 체류한 18세 이하의 자녀는 가족관계지표에서 제외됨
 - 거소는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91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1박 이상을 보내야 하며, 친척(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손녀)의 집일 경우에는 최소 16박 이상을 보내는 장소이어야 함
 - 근로관계는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최소 40일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 90일 기준은 당해 과세연도 이전 2개 과세연도 중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를 말함
 - 국가관계는 과세연도에 자정 12시까지 가장 많이 체류한 날이 있는 국가가 영국일 경우에 적용됨
 - 과세연도에 자정 12시까지 체류한 날이 동일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낸 시간이 가장 많은 날이 속하는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

<표 5> 과세목적상 영국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

	판정기준	구체적 내용
국외거주 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국외거주 심사	거주자 법정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 ① 1차 국외거주 심사: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영국에 16일 미만 체류한 경우 적용됨 ② 1차 국외거주 심사: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영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없고, 당해 과세연도에 영국에 4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됨 ③ 3차 국외거주 심사: 업무상 중요한 단절 없이 해외에서 과세연도 동안 전일근무제로 근무하는 경우 적용됨
영국거주 심사를 통과하면 영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되는 것임	영국거주 심사	① 1차 영국거주 심사: 과세연도 중 영국에 183일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됨 ② 1차 영국거주 심사: 영국에 주거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됨 ③ 3차 영국거주 심사: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요한 단절 없는 전일근로자에게 적용함
국외거주 심사나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은 영국관계 심사를 통해 거주성을 판정받게 됨: 영국관계 심사는 영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와 거주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성을 판단함	영국관계 심사	국외거주 심사와 영국거주 심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함(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을 고려함)

자료: 세법연구센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9, p. 33 재인용

라. 과세연도 분할

- 영국은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분할함
 - 과세연도 중에 항구적으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으로 과세연도가 분할되며, 과세관청의 승인이 필요함
 - 해외에서 1년 이상 전일근무제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적용됨
 - 직전 과세연도는 영국 거주자이어야 하며, 다음 과세연도는 3차 국외거주 심사를 충족하게 됨에 따라 비거주자가 됨
 - 영국에서 1년 이상 전일근무제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시 적용됨
- 항구적 거주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거주자가 되며, 과세연도가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으로 분할되어 과세됨
 - 반대로, 항구적 거주이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국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 됨
 - 과세연도가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으로 분할되어 과세되며, 신고는 과세연도 종료 후 과세당국에 신고함
 - 항구적 거주를 위해 출국한 자가 다음 과세연도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소한 1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비거주자이어야 함

2. 기타 국가⁸⁾

- 미국은 납세의무자를 (1)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 (2) 외국인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음
 - 세법상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 체류일수 183일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 관계를 통하여 판단하고 있음
- 캐나다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거주 관련성

8) 구자은·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5, pp. 50~54 참조

(resident ties)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거주자를 실질적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로 나누고 있으며, 간주 거주자는 체류일수에 따라 판단함

- 캐나다는 간주 거주자 판정시, '183일 이상 거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거주자 판정 결정에 있어서 '거주'를 판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판정 기준을 두고 있음
 - 사실판정 기준 중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각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일본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 비영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주소'가 거주자 판정의 주요 요소임

- 일본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임

□ 호주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바, 거주자 판정시 핵심적인 기준은 '거주'임

- 호주는 실질적인 '거주'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거주 테스트를 통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
- 납세자가 거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 퇴직연금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함

□ 독일은 '주소'가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인 기준이며, 우리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과 유사함

- 독일은 조세기본법에 주소와 거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소'는 '자연인이 주거를 유지하고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소'임
 - '거소'는 '자연인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나 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지'로 정의하고 있음
- 주소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로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⁹⁾

9) 다만, 기혼자는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벨기에는 거주지나 경제적 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을 거주자로 보고 있음
- 벨기에의 소득세법상 거주지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거주지와 경제적 중심지를 보고 있음
 - 거주지는 국적이나 법적인 거주지와 무관한 개인의 주된 정착지, 개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임
 - 경제적 중심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함
 - 벨기에의 과세당국은 사실관계에 의해 거주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사용 가능한 주택을 가진 곳, 가족을 구성하는 곳, 재산의 중심지가 있는 곳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국제 비교

- 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표 6>과 같음

<표 6>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국 가	거주자 판정기준	고려요소
우리나라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사실관계
미국	① 시민권자인 경우 ② 영주권 기준 ③ 실질적인 거주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만족하는 경우	시민권(영주권), 체류일수
캐나다	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주'를 판정함 ②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봄	체류일수, 사실관계
일본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사실관계
호주	① 거주 테스트 ② 주소 테스트 ③ 183일 테스트 ④ 퇴직연금 테스트	사실관계
독일	① 독일 내에서 '주소'를 가진 자연인 - 주소는 자연인이 주거를 유지하고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소 ② 일상적 거소를 갖고 있는 자연인 - 거소는 자연인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나	사실관계

국 가	거주자 판정기준	고려요소
	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지(6개월 이상 체류시 일상적 소재지로 봄)	
벨기에	① 벨기에 내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 거주지: 국적이나 법적인 거주지와 무관한 개인의 주된 정착지, 개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곳 ② 벨기에 내 경제적 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 경제적 중심지: 재산이 실제 소재한 곳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	사실관계

주: 1.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민권이나 체류일수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제외함. 우리나라의 경우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국가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시 고려대상 및 고려방법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세법연구센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9, 구자은·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5 재구성함

IV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¹⁰⁾

1.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음
 - 거주자는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
- 즉,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와 더불어 과세관할권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과세권 측면에서 거주자 개념은 기본적으로 과세관할의 인적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함¹¹⁾
 - 거주자의 개념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소득원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내지 거주에 관한 개념이 세법상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영국에서는 기존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결정은 법원(courts)에 의해 확정된 광범위한 사실에 의존하여 거주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2013년 4월 6일부터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심사단계별로 중요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의 거주자 여부 판단시 자의적인 해석을 완화함
 - 특히, 과세관청은 주거, 중요한 단절, 가족관,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 등의 보조지표의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영국의 과세관청은 새로운 거주자 법정심사가 기존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결정 방법보다 객관적인 결정기준의 순서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

10) 세법연구센터(2013), pp. 25~67 요약 및 정리

11)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소규모 개방경제에 적합한 국제조세제도 정비방안』, 2012. 6, p. 183

2. 개선방안

- 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자 기준을 현행 ‘거소’ 개념에서 ‘183일 체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시 그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의 순서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하였는바, 단계적으로 심사를 적용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둘째, 기준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보다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즉, 민법상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기초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 여부 판단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 중요한 단절,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 등 보조지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소’ 기준으로 국내에 거

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바, '1년 이상의 거주' 규정은 국제적 이중거주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거주자 판단 시 '거소' 기준은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때'부터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 구자은·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5.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하반기에도 역외탈세·민생침해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2012. 7. 10.
-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소규모 개방경제에 적합한 국제조세제도 정비방안』, 2012. 6.
-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대규모 역외탈세 급증」, 2013. 3. 20.
- 세법연구센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12.
- _____,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9.

Tax Justice Network,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2012.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작성자 :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02-2186-2222)